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99

발의연월일: 2021. 8. 11.

발 의 자:윤재갑・양정숙・홍성국

이동주 • 문진석 • 위성곤

이개호 · 이학영 · 김승남

안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,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·기술 필요 업무,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·관리하고 있으며,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·관리되고 있음.

그러나,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·운영되고 있는 타 국 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,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생	제37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	②
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	
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	
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.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
	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
	<u>리</u>
<u><신 설></u>	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
	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
	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
	을 지원할 수 있다.